정　　관

피아이첨단소재 주식회사

정 관

피아이첨단소재 주식회사

피아이첨단소재 주식회사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본 회사의 명칭은 국문으로는 “피아이첨단소재 주식회사”라 하고, 영문으로는 “PI Advanced Materials Co., Ltd.”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사의 사업목적은 아래와 같다.

① 폴리이미드 필름 및 관련 가공제품의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

② 부동산임대업

③ 폴리이미드 수지 및 관련 가공제품의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

④ 노우하우, 기술의 판매 및 임대

⑤ 기타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 3 조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① 본 회사의 본점은 대한민국 충청북도 진천군 내에 둔다.

②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기타 영업소를 설치 또는 폐쇄할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imaterials.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내에서 발간되는 일간 헤럴드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자본 및 주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000,000주로 한다.

(1주의 금액 5,000원 기준)

제 8 조 (주식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 8 조 의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단,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8 조 의 3 (무의결권 배당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1종)은 무의결권 배당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0%이상 15%이내에서 배당하며, 구체적인 배당률은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유무상증자시에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종류 및 내용의 주식을 배정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보통주식만 증자시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을 배정한다. 우선주식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시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8 조 의 4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2종)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0년이 되는 날 또는 그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4.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은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
가. 회사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나. 특정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의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다. 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라. 보통주식의 주가가 전환주식의 주가를 1월 이상 상회하는 경우
③ 전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0%이상 15%이내에서 배당하며, 구체적인 배당률은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전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⑤ 전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유무상증자 시에 전환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종류 및 내용의 주식을 배정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보통주식만 증자 시는 전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을 배정한다.
⑦ 전환주식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⑧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 의 5 (무의결권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3종)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이하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0%이상 15%이내에서 배당하며, 구체적인 배당률은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유무상증자 시에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종류 및 내용의 주식을 배정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보통주식만 증자 시는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을 배정한다.
⑥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⑦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⑧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0년이 되는 날 또는 그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고, 존속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 의 6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4종)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연 0%이상 15%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해야 한다.
2.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0년이 되는 날 또는 그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이사회는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한다.
5.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

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6.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③ 회사는 상환에 관한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상환주식에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0%이상 15%이내에서 배당하며, 구체적인 배당률은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상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⑥ 상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⑦ 유무상증자 시에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종류 및 내용의 주식을 배정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보통주식만 증자 시는 상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을 배정한다.
⑧ 상환주식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 8 조 의 7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5종)은 회사 또는 주주가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선택권을 가지고 제8조의4 및 제8조의6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종류주식(이하“전환상환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기타 전환상환주식의 상환 및 전환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제8조의4 및 제8조의6에 의거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 8 조 의 8 (무의결권 배당우선 (존속기한부)전환상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6종)은 회사 또는 주주가 상환에 관한 선택권을 가지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종류주식(이하“(존속기한부)전환상환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기타 (존속기한부)전환상환 주식의 상환 및 전환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의거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 8 조 의 9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 각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9 조 의 2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관련 법령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관련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1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7 년이 되는 시점 내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정한 날까지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부터 2

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⑩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1 조 (명의개서 등)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및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본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본다.

③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3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권리행사 주주로 할 수 있고,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채

제 13 조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회사의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여신전문금융회사,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투자조합 등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회사의 사업상 중요한 기술의 도입,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할 종류주식의 종류와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회사의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여신전문금융회사,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투자조합 등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회사의 사업상 중요한 기술의 도입,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종류주식의 종류와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 의 2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15 조 의 3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라 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16 조 (주주총회의 종류 및 시기)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의 두가지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17 조 (소집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제 18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 회사의 본점이나 이사회가 결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 19 조 (소집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0 조 (주주총회의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1 조 (의결권,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주주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

주주총회에서는 회의의 연기 또는 속행을 결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 24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각 비치한다.

제 25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거나 현저하게 질서를 문란케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6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회사, 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5 장 이사, 대표이사, 이사회

제 27 조 (이사의 수)

① 본 회사의 이사는 4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28 조 (이사의 선임방법)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9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서 각 이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단,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 30 조 (결원)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27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1 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1 조 의 2 (이사들의 임무)

①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 의 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2 조 (대표이사)

① 이사회는 이사들 중에서 1명의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본 회사의 일상업무를 통할하되 내규와 이사회가 수시로 설정하는 권한 및 의무부여에 관한 정책 및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33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 그 이사가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4 조 (소집통지)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영업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5 조 (회의장소)

이사회는 본 회사의 본점 또는 그 회의를 소집하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지정하는 기타 장소에서 개최한다.

제 36 조 (이사회의 의장)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로 한다.

제 37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모든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7 조 의 2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내부거래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임원보수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3조부터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8 조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비치한다.

제 39 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40 조 (이사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41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서 각 이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단,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⑥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2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언제라도 이사에 대하여 본 회사의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본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각종 서류를 조사하여 동 서류가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 43 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 산

제 44 조 (사업연도)

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본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그 설립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5 조 (재무제표의 작성 및 제출)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정기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6 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① 이익준비금
② 기타의 법정적립금 및 주주총회가 정하는 그 밖의 임의적립금
③ 배당금
④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7 조 (배당금의 지급)

① 배당금은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및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배당금은 그 배당승인을 한 주주총회에서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주주총회에서 배당승인을 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③ 배당금청구권은 그 배당을 승인한 주주총회 결의 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전기의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배당금청구권에 대응하는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④ 회사는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⑤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⑥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48 조 (중간배당)

본 회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들에게 금전으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제정일)

본 정관은 2008년 6월 2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2 조 (개정일)

본 정관은 2008년 6월 25일부로 제1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11년 3월 15일부로 제2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14년 6월 30일부로 제3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14년 8월 1일부로 제4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18년 3월 23일부로 제5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로 제6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20년 2월 28일부로 제7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20년 5월 27일부로 제8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21년 3월 19일부로 제9차 개정하여 시행한다.